

인천 청라국제도시 A-4블록 인천청라 시티프라디움 근린생활시설 입점자모집공고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2조에 의거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1141 (2022.01.19)]로 입점자 모집공고 공급신고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131(청라동), 인천청라국제도시 A-4블록 근린생활시설
- 대지면적 : 총 대지면적 20,041.80㎡ 중 근린생활시설 1,245.61㎡
- 공급(분양)방법 : 선착순 수의계약
- 공급규모 : 근린생활시설 3개동(지상 1층) 총 22개 호실
- 본 근린생활시설은 사용검사(2021.07.23.)를 받아 공급되는 준공 완료된 상가시설입니다.

■ 공급면적

(단위: ㎡)

구 분	층	호 수	분 양 면 적			대 지 지 분
			전 용 면 적	공 용 면 적	합 계	
근린생활 시설 - 1	지상 1층	101	35.2688	1.6130	36.8818	57.2417
	지상 1층	102	34.2000	1.5640	35.7640	55.5069
	지상 1층	103	34.2000	1.5640	35.7640	55.5069
	지상 1층	104	34.2000	1.5640	35.7640	55.5069
	지상 1층	105	46.9603	2.1476	49.1079	76.2173
	소계		184.8291	8.4526	193.2817	299.9797
근린생활 시설 - 2	지상 1층	106	35.2688	1.6130	36.8818	57.2417
	지상 1층	107	34.2000	1.5640	35.7640	55.5069
	지상 1층	108	34.2000	1.5640	35.7640	55.5069
	지상 1층	109	34.2000	1.5640	35.7640	55.5069
	지상 1층	110	34.2000	1.5640	35.7640	55.5069
	소계		172.0688	7.8690	179.9378	279.2693
근린생활 시설 - 3	지상 1층	111	35.2688	1.6130	36.8818	57.2417
	지상 1층	112	34.2000	1.5640	35.7640	55.5069
	지상 1층	113	32.2724	1.4759	33.7483	52.3785
	지상 1층	114	34.1611	1.5623	35.7234	55.4439
	지상 1층	115	34.2000	1.5640	35.7640	55.5069
	지상 1층	116	34.2000	1.5640	35.7640	55.5069
	지상 1층	117	34.2000	1.5640	35.7640	55.5069
	지상 1층	118	34.2000	1.5640	35.7640	55.5069
	지상 1층	119	34.2000	1.5640	35.7640	55.5069
	지상 1층	120	34.2000	1.5640	35.7640	55.5069
	지상 1층	121	34.2000	1.5640	35.7640	55.5069
	지상 1층	122	35.2688	1.6130	36.8818	57.2417
	소계		410.5711	18.7762	429.3473	666.3610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구 분	층	호 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잔금(8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분양대금	계약시	입주지정일
근린생활 시설 - 1	지상 1층	101	167,350,922	125,135,526	12,513,553	305,000,000	61,000,000	244,000,000
	지상 1층	102	162,279,088	115,200,829	11,520,083	289,000,000	57,800,000	231,200,000
	지상 1층	103	162,279,088	115,200,829	11,520,083	289,000,000	57,800,000	231,200,000
	지상 1층	104	162,279,088	115,200,829	11,520,083	289,000,000	57,800,000	231,200,000
	지상 1층	105	222,829,145	141,064,414	14,106,441	378,000,000	75,600,000	302,400,000
근린생활 시설 - 2	지상 1층	106	167,350,922	132,408,253	13,240,825	313,000,000	62,600,000	250,400,000
	지상 1층	107	162,279,088	119,746,284	11,974,628	294,000,000	58,800,000	235,200,000
	지상 1층	108	162,279,088	119,746,284	11,974,628	294,000,000	58,800,000	235,200,000
	지상 1층	109	162,279,088	119,746,284	11,974,628	294,000,000	58,800,000	235,200,000
	지상 1층	110	162,279,088	119,746,284	11,974,628	294,000,000	58,800,000	235,200,000
근린생활 시설 - 3	지상 1층	111	167,350,922	131,499,162	13,149,916	312,000,000	62,400,000	249,600,000
	지상 1층	112	162,279,088	119,746,284	11,974,628	294,000,000	58,800,000	235,200,000
	지상 1층	113	153,132,948	90,788,229	9,078,823	253,000,000	50,600,000	202,400,000
	지상 1층	114	162,094,902	93,550,089	9,355,009	265,000,000	53,000,000	212,000,000
	지상 1층	115	162,279,088	116,109,920	11,610,992	290,000,000	58,000,000	232,000,000
	지상 1층	116	162,279,088	116,109,920	11,610,992	290,000,000	58,000,000	232,000,000
	지상 1층	117	162,279,088	116,109,920	11,610,992	290,000,000	58,000,000	232,000,000
	지상 1층	118	162,279,088	116,109,920	11,610,992	290,000,000	58,000,000	232,000,000
	지상 1층	119	162,279,088	116,109,920	11,610,992	290,000,000	58,000,000	232,000,000
	지상 1층	120	162,279,088	116,109,920	11,610,992	290,000,000	58,000,000	232,000,000
	지상 1층	121	162,279,088	116,109,920	11,610,992	290,000,000	58,000,000	232,000,000
	지상 1층	122	167,350,922	129,680,980	12,968,098	310,000,000	62,000,000	248,000,000

※ 상기 공급금액은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실별 공히 정부수입인지세, 소유권이전 관련 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임.

※ 대지지분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登記면적이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 및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시설용도

시설용도		권 장 용 도
근린 생활 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료기기 등의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1,000㎡미만) - 휴게음식점, 제과점(300㎡미만)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함)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주민의 진료, 치료 등을 위한 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500㎡미만) <p>※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p>
	제2종 근린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극장, 영화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500㎡미만), 종교집회장(500㎡미만) - 사진관, 표구점, 일반음식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등 - 휴게음식점, 제과점(300㎡이상) -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 및 무도교습을 위한 시설은 제외), 직업훈련소(운전,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500㎡미만)) - 독서실, 기원,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놀이형시설(500㎡미만) <p>※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 (단,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다중생활시설은 제외[주택법 시행령 제7조 제2호], '다중생활시설'이라 함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한다)</p>

-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동 시행령의 관한 규정에 따라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하며, 관할관청의 인허가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지지 않음.
- ※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의 시설은 제외함.
- ※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개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관련 인허가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 ※ 건축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의거 바닥면적합계(점포 인접여부와 무관하게 합계됨)의 제한이 존재하는 시설이 있으니, 확인 후 계약 진행하시기 바람.

■ 공급일정 및 구비서류

구 분	일 시	공급방법	장 소
공급일정	2022.01.21.(금) ~ [10:00~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착순 수의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착순 입금자 (계약금 입금순서에 한해 호실 선택 분양) - 오전 10시 이후 입금에 한함. (오전 10시 이전 입금시 무효처리) ※ 입금 후 분양사무실 방문 / 해당 호실 및 계약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 시 구비 서류 (신분증, 이체확인증(입금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 기한 내 미 방문 시 무효 처리 (기한 : 입금 후 30분 내) - 1인 2개호실 이상 진행시 각각 입금 희망 ※ 미 계약 및 무효 처리 시 입금 금액 환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불 및 환불처리기간 약 40일 소요 - 입금통장과 동일한 통장 이외 환불 불가(입금증 및 이체확인증 첨부) 	<p>인천청라국제도시 A-4블럭 인천청라 시티프라디움 근린생활시설1 분양사무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 131)</p> <p>☎ 1544-4388</p>

※ 입금자명 기재시 희망호실, 성명 기재필수 ex) 106홍길동

■ 계약일정

구 분	계약 기간	구 비 사 항	계약 장소
계약 체결	2022.01.26.(수) ~ [10:00 ~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1부(법인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인감증명서(부동산 계약용)1부 : 각 호별 -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 법인계약시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리인 계약 시 추가사항 ◇ 위임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 	<p>인천청라국제도시 A-4블록 인천청라 시티프라디움 근린생활시설1 분양사무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대로 131)</p> <p>☎ 1544-4388</p>

- ※ 상기 제반서류는 계약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 제반서류는 각호별 접수 및 계약 시 각각 1부씩 필요함.

■ 납부계좌 안내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근린생활시설 대금 납부계좌	국민은행	978201-01-045647	(주)시티건설

- ※ 입금자명 기재시 희망호실, 성명 기재필수 ex) 106홍길동
- 상기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음. (추후 예금주는 변경될 수 있음)
- 잔금은 실입점일과 입점지정기간 종료일 중 빠른날(이하 "잔금납부일"이라 함)에 완납하여야 함.
- 잔금 약정기일까지 대금 납부를 지연하였을 경우, 미납금액에 대해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연체료가 부과됨.(단, 납부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
- 납부인정 순서는 연체료가 있는 경우 연체료 선 공제 후 순차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며, 대금 납부(연체료 포함) 완료 후 등기이전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 대금(연체료 포함) 미납부로 인한 등기 등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계약자에게 있음.

■ 입점예정일 : 2022년 03월경 (구체적인 입점가능일은 추후 통보예정임)

- 실입점일이 입점예정(지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점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 당사가 입점지정일을 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전에 입점 안내문을 통보하며, 입점지정일이 경과됨에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 하여야 함.

■ 공통 유의사항

-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평면도 등은 공급신청자(입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20.2.11.개정)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필요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거나 본 공고와 관계법령(지침 등)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관계법령(지침 등)을 적용함.
- 계약체결 전 모집공고, 상가용도, 현장여건, 안내문 및 계약서 내용을 숙지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않은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계약자는 단지 내 상가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한 용도로 운영하여야 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거 용도·면적제한 업종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 후라도 분양 질서를 해치거나 부정한 방법(타인 명의도용 등) 등으로 계약되었음이 판명될 경우 해당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공급금액 중 계약금 전액은 공급 회사에 귀속되며 이에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체결되지 않은 상가에 대한 상가수, 상가면적, 분양가격 등은 당사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잔금을 납부기한(단, 잔금은 입점지정기간 개시일) 이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연체이자는 공급 계약서에 따름.
-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연락처, 이메일주소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당사에 서면(주민등록증 포함)통보하시기 바람.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사에 일체 이익을 제기하지 못함.
- 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하고 당사에 통보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시기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에 이에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당사에 이익을 제기하지 못함.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점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입점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는 지방세법 기준에 따라 잔금 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함.
- 소유권 이전절차를 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전액 부담함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는 소유권이전 완료 전에 공급회사의 승인 없이 해당 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가면적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상가 사용에 대한 제반사항(영업허가, 상가관리, 용도변경, 인허가에 따른 시설추가 사용 등)은 계약자의 책임이며, 당사는 일체의 업종보호책임이 없음.
- 각 상가의 시설기준은 당사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상태대로 공급하며, 기타 부가되는 시설(칸막이, 진열대, 가스배관, 상수도, 전기시설, 냉·난방시설, 간판 등)은 계약자(계약자)가 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함.
- 계약자(수분양자)는 각 호실별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간을 전용하거나 점유할 수 없음.
- 입점지정기간 이후에는 입점여부와 관계없이 기 통보된 입점일부터 발생하는 제세공과금(관리비, 전기 . 수도요금 등)을 계약자가 직접 부담하여야 함. 단, 입점지정기간 내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 잔금완납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직접 부담하여야 함.
- 각 상가별 전용면적은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정산하기로 함.(단, 소수점이하의 면적변동 및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상호정산하지 않기로 함.)
- 전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주차장, 화장실 등)은 상가 전체 공용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하게 계산 배분되었음.
- 상가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상가 대지 내 일정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어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요청을 할 수 없음.
- 해당 지자체의 건축물대장 등록업무지침에 따라 최초 건축물대장 등록 시 상가의 세부용도(업종)가 지정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세부용도(업종) 지정에 협조하여야 함. 또한 건축물대장 등록 이후 용도(업종)변경은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하여야 함.
- 입점 시 업종 중복에 대해서는 당사에서는 관여하지 않으며, 시설용도 범위 내에서의 업종선택은 계약자 상호간 협의하여 처리. 결정하시기 바람.
- 학원, 교습소 용도로 개업을 하고자 하는 분은 계약 이전에 관할 교육청에서 최소면적 용도 등의 등록, 인허가 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기 바람에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계약자는 입점지정 최초일 까지 본 상가의 영업 및 제반관리에 필요한 조직(상가 자치관리위원회)을 구성하고 입점지정 최초일 부터 상가에 대한 제반 유지관리는 계약자가 구성한 상가자치위원회가 하여야 함.
- 간판설치는 관련 법률 및 생활권별 지구단위계획지침, 옥외광고물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부착하여야 함.
- 계약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항 및 기타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의 경우 계약자의 동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각 생활권 내 기반시설(도로, 상. 하수도, 학교 등)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서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일부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점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행자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본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시 권리의무승계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비용, 잔금 납부는 권리의무승계 시 동시에 완료 하여야 함.
- 본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대출 알선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계약자 본인의 책임으로 공급대금을 전부 조달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연체료 가산 및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및 공급안내문 제반도면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현장 유의사항**

- 전기수전용량은 현 부하에 따른 계약용량이며, 입점시 전기사용계약자 명의를 입점자로 변경조치 하여야 하고, 용도에 따른 부하증설 및 수전방식 변경은 계약자가 직접해야함.
- 상가 내 기동 및 돌출벽이 존재할 수 있으며, 기동 및 돌출벽은 전용면적에 포함됨.
- 도시가스배관은 상가 인입분기까지 설치되며, 공급신청, 각종 인허가 사항, 계량기 설치비용(배관공사비포함) 및 가스시설 분담금은 상가 입점자 부담임.
- 상가 내 별도 환기 시설 및 냉난방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에어컨 실외기실은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와 관련한 소음민원 등과 관련된 민원사항은 계약자가 해결하여야 함.
- 음식점 조리 및 가공에 의한 냄새 등과 관련된 민원사항은 계약자가 해결하여야 함.
- 동일인이 인접한 2개 상가 이상을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잔금 완납 전 칸막이벽의 제거는 불가하며, 필요시 잔금 완납 후 계약자 부담으로 하여야 함.
- 상가 주변의 시설물 또는 조경수목 등이 상가의 영업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하여 이전 또는 철거를 요구할 수 없음.
- 본 상가의 옥상은 아파트 단지 내 조경으로 계획되어 있어, 상가 계약자가 점유할 수 없음.
- 조경, 세부 식재계획,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가와 인접한 아파트 등의 입주자들로부터 상가영업과 관련하여 사생활 침해, 소음 및 냄새 등에 따른 민원사항은 계약자가 해결하여야 함.
- 상가 입점인 및 상가방문객은 상가전용 주차장(근린생활시설 8대)를 이용하여야 하며 아파트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으며, 아파트 전용주차장 이용시 관리사무소의 운용방침에 따라 필요시 유료화 될 수 있음.
- 본 건물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와 계획은 향후 관계 기관의 심의 결과 및 외부 특화설계에 따라 입점 시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가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별도로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각 호실별 바닥단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감자재의 변경 공사는 불가하며, 필요시 잔금 완납 후 계약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 상가 동·호별 후문 및 창문이 위치 및 존재 여부가 상이 하므로 계약 전 주출입문, 후문, 창문 위치 및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향후 주변단지의 신축, 개축 등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 사 명	(주)해승종합건축사무소		(주)미래이앤지		부가가치세 포함 / 아파트 포함
감리금액	772,305,600		63,500,000		

■ **사업주체**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	(주)시티건설	110111-4888834
시공회사	(주)시티종합건설	200111-0042295

■ **분양사무실**

분양사무실	문의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대로 131(청라동), 인천청라 시티프라자 근린생활시설1 분양사무실	☎ 1544-4388

※ 상기 공급공고에 기재된 내용은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시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당사 분양사무실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